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15호 2020. 4. 10.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68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7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3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369호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6
- 삼척시 공고 제37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27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 2020 - 68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하였기에, 동법 제16조 제8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삼척시장

1. 사업명 : 장호리 주택단지 조성사업
2. 사업주체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식회사나폴리 대표 이상윤
 -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236
3. 사업개요
 - 대지위치 :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산141외 3필지
 - 사업면적 : 24,805㎡
 - 사업규모
 - 단독주택 부지 : 46필지 16,117.4㎡
 - 기타 부지 : 14필지 4,791.6㎡
 - 단지 내 도로 : 3,896㎡
4. 사업시행기간
 - 2020. 6. 1 ~ 2021. 12. 31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삼척시 고시 제2020 - 7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10.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안길 150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4.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22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안길 150	20200410		20090626	행정구역명 활용 (건의령로 분기)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리 101-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미로강변로3길 112	20200410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 (미로강변로분기)
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141-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당골길 254-55	20200410		20090626	행정구역, 지형지물(당골) 복합 활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코시일	사유	도로명 코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22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안길 150	3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22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안길 150	20200410		20200410		20090626	행정구역명 활용 (건의령로 분기)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리 101-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미로강변로3길 112	20200410		20200410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미로강변로분기)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증봉리 141-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증봉당골길 254-55	20200410		20200410		20090626	행정구역, 지형지물(당골) 복합 활용	

삼척시 공고 제2020-369호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삼척시장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54호)이 2020. 5. 1.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130호)으로 전부개정 되어 적용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위임사항 등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주요내용이 지방회계에 관한 사항이며, 재무회계운영기준 (복식부기)과 혼선이 있어 제명 변경

- (당초)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 (변경)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나. 위임·전결 기준액 결정권을 지방이양하여 자율성 확대

- ⇒ 삼척시 징수관 등 위임·전결 기준액 개정(안) 참조
- (징수관의 직무위임) 세입 징수결정 대상과 금액의 범위에 대한 분임 징수관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안 제3조)
- (재무관의 직무위임) 자체단체별 공사, 물품, 용역, 일상경비 등 대상과 금액의 범위를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안 제4조)

- (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 자치단체별 재정규모, 조직에 따라 예산집행품의 전결 권한을 훈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 (안 제5조)

구분	공사	용역·물품	기타
시·군·자치구	10억원 이하	5억원 이하	2억원 이하, 법정경비

* 자치단체장은 위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시장,국장,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음.

- (재정사항의 합의) 회계담당부서 및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에 대한 기준액의 범위를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안 제6조)

다. 재무회계 규칙 재편으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

- (행안부 훈령) 자치단체 공통으로 적용받는 규정은 존치하고, 일부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 유사·중복 조항 삭제
- (자치단체 규칙) 지방자치단체 공통으로 적용받는 규정(행안부 훈령 적용)은 삭제하고, 당해 자치단체에 적용받는 사항만 존치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회계과

○ 전화 : 033-570-3271

○ FAX : 033-570-3135

- 붙임 1.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붙임 1]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삼척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 1. 법령, 자치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세외수입 포함)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 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 1. 법령, 자치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 2. 대체징수결정
- 3. 과오납금의 반환
-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삼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 4. 조달물자의 구매
- ③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 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 다. 물건의 매입과 그 밖에 1건당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집행

2. 국장

- 가.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 다. 물건의 매입과 그 밖에 1건당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집행

3. 실·과장

- 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
-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본청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며, 시의회 및 제1관서는 해당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으로서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삼척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삼척시재무회계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삼척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재무회계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 한 규칙」”으로 한다.

⑦ 삼척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삼척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4호”를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⑧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삼척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삼척시재무회계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삼척시 공공도서관 열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삼척시재무회계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삼척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관직명	본 청	시의회	제1관서
회계책임관	자치행정국장	-	-
징수관	자치행정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단,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는 경제건설국장으로 함
분임징수관	세무과장 세외수입 주관 및 특별회계담당실·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단,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는 소장으로 함
재무관	자치행정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단,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는 경제건설국장으로 함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소장이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단,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는 소장으로 함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서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 재권관리관	자치행정국장	-	-
재권관리관	소관 실·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괄 부채관리관	기획감사실장	-	-
부채관리관	소관 실·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기금총괄 관리관	기획감사실장	-	-
통합지출관	회계과장	-	-
지출원	재무(지출)업무담당	의사담당	재무(지출)업무담당
수입금 출납원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담당, 담당, 세외수입주관 업무담당, 특별회계 세입업무담당	의사담당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재무(지출)업무담당자	재무(지출) 업무담당자	재무(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 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	기타관서·임시관서	읍·면·동	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	-	-
징수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
분임징수관	-	-	-
재 무 관	-	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소장
총괄채권관리관	-	-	-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
총괄부채관리관	-	-	-
부채관리관	-	-	-
기금총괄관리관	-	-	-
통합지출관	-	-	-
지 출 원	-	읍·면·동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재무(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제1관서)	기타관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수산자원센터 문화예술센터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추정금액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전체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전체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체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8. 기타 경비	전체	

※ 합의방법 : 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비는 계약관리담당의 합의를 받고, 그 외의 경비는 경리담당의 합의를 받는다.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전체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전체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전체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전체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전체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전체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전체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전체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조례에 속하는 사항	전체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관으로 하여금 분임징수관에게 그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의 위임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으로 하여금 분임재무관에게 그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의 위임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부단체장을 말한다), 실·국장, 실·과장 등에게 예산 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따로 정한다.

3. 시·군 및 자치구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은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처(국·과) 및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 제조·구매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기타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

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합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의한도를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표준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시·도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②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시·도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②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도지사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단체장, 실·국장, 실·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의회사무처(국·과)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국)·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규칙 제13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 별표 1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3. 시·군·자치구

관 직 명	본 경	지방의회	제1관서
회 계 책 임 관	회계업무담당실·국장, 회계부서에 실·국장 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기획실장	-	-
장 수 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분 일 징 수 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재 무 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입재무관)
분 일 재 무 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 괄 채 권 관 리 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총 괄 부 채 관 리 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총 괄 기 금 관 리 관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
통 합 지 출 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	의정(사)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수 입 금 출 납 원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세 입 세 출 출 납 회 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의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	기타관서·임시관서	읍·면·동	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 계 책 일 관	-	-	-
경 수 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
분 일 경 수 관	-	-	-
재 무 관	-	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 일 재 무 관	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	소장
총 팔 채 권 관 리 관	-	-	-
채 권 관 리 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
총 팔 부 채 관 리 관	-	-	-
부 채 관 리 관	-	-	-
총 팔 기 금 관 리 관	-	-	-
통 합 지 출 관	-	-	-
지 출 원	-	읍·면·동의 지출업무담당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 입 금 출 납 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세무·재무업무담당	-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재무업무담당
세 입 세 출 납 의 원	서무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자	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의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비고 1. 0000담당 : 시·도(팀·계장 등의 5급 이상), 시·군·자치구(팀·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시·도(5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시·군·자치구(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	기타관서

<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실·국장	실·과장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 제조·구매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기타 경비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실·국장	실·과장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붙임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규칙
- 의견제출자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0-37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0.04.07. ~ 2020.04.21. (15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20.04.22.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신유○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153
		목조/합석 (1층:58.84㎡ 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4. 07.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